산지관리법 공포, 석재업계 비상한 관심

국내 최초로 제정…채석, 매각, 재해방지 등 관련법률 게시

산지관리법이 최초로 제정, 지난 1월 공포되어 석재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한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석재를 '산지안의 토석 등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으로 정의하고 채석, 매각, 재해방지 및 복구 등의 내용에서 관련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중 석재관련 법률을 전문 그대로 소개한다.

제3장 채석·토사채취 등

제1절 채 석

제25조(채석허가 등) ①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석재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에 의한 채석기간은 채석량·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이내에 허가받은 석재의 수 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 장으로부터 채석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1.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당해 산지전용지역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가 토사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산림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제26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광구안에서의 채석 등) ①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안에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채석하고자 하는 구역안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채광작업과 채석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중 대리석을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유림의 산지 :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석재의 매매계약

2.제1호외의 산지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석재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28조(채석허가의 기준) ①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4.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5.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채석면적, 채석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②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석재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제1항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산지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괴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굴취·채취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아 이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석재의 굴취·채취가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이내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은 당해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석재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채석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석재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3.제25조제2항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석재외의 석재를 굴취·채취한 경우

5.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5조(국유림의 산지안의 석재·토사의 매각 등)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석재 또는 토사를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석재 및 토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석재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석재를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석재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석재를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입신청자 및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각 또는 무상양여 받은 석재 및 토사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주식회사 영성건장
YOUNG SUNG GUN JANG CO.,LTD.

석재 리모델링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합니다!!
석재관리 전문회사 영성건장

정밀 진단! 정확한 처방! 꼼꼼한 물리치료!
그리고 투명한 A/S까지
영성은 유럽식공법과 최첨단기술로
한층 더 새로운 건물로 만들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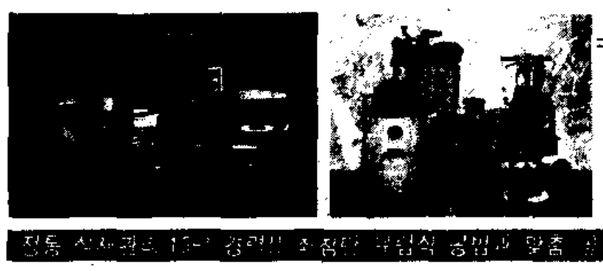

정통 석재관리 15년 경력의 노하우와 유럽식 공법과 최첨단으로 석재가 되살아납니다

■ 이태리 대리석, 화강석, 인조석 등 석자재 하나하나에 대한 맞춤공법과 15년경력 영성만의 노하우로 재생 및 관리, 보수, 시공을 합니다.
■ 석자재로 된 건물 바닥이나 벽면, 계단, 외벽 등이 손상되었을 때 이탈리아 독일, 미국의 선진장비와 보수자재로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취급품목 : 이탈리아 테낙스 석재전용 접착 및 보수제 | 발수, 발색, 왁스, 코팅 특수 종도의 케이팔 | 미국 아루아이스 크리나, 칼라런트, 발수보호용 실러 | 독일 브릴리아도르 광택 파우더 및 액상혼합형 광택제 | 대리석 크리스탈 라이징 화강석 광택제 | OKSTONE파우더 광택제 | 이탈리아 대리석 및 화강석 연마석, 몬다알 화강석 대리석 연마기 | 계단 광택기 | 대리석, 화강석 연마기 | 석재 광택기 | 슬식 진공 청소기 등

■ 완벽한 수평(LAEEL)조정과 본래의 광택 재생은 영성기업 뿐입니다

수평(LEVEL)물갈기 전 수평(LEVEL)물갈기 후

■ 시공실적 : 신라호텔 리모델링, 대림건설 본사사옥 리모델링, 제주 하이야트호텔 리모델링, 삼성래미안, 대림아크로빌, 타워팰리스, 세종호텔, 르네상스호텔, 부산 크라운호텔, 제주 신라호텔, 대전 유성관광호텔, 영동호텔, 창원호텔, 창원국제호텔, 군산관광호텔,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동방프라자, 신세계백화점, 서현역삼성플라자, 테크노마트, 대호건설사옥, 전쟁기념관, 제일은행 구본점(문화재), 광주 제일빌딩, 웃블선교원, 천안 교육문화회관, 삼성자동차박물관, 한국경제신문사옥, 서울대학병원, 삼성의료원,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산업대학교, 두산타워 등